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등(제27조제2항 관련)

1. 상호나 그 밖의 사항: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
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: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시청하는 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 - 가. 전체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“ALL”을 표시한다.
 - 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“12”를 표시한다.
 - 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“15”를 표시한다.
 - 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“18”을 표시한다.

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: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·선정성·폭력성·대사·공포·약물·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표 핵심사유 3개 이내의 항목에 대하여,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. 다만, 전체관람가 등급은 제외한다.

가. 항목표시

*항목표시는 시청하는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

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
(제27조제3항 관련)

1.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의 표시

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이나 끝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

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

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는 시청하는 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초기 화면에 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.

가. 전체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“ALL”을 표시한다.

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“12”를 표시한다.

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“15”를 표시한다.

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“18”을 표시한다.

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

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·선정성·폭력성·대사·공포·약물·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표 핵심사유 3개 이내의 항목에 대하여,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체관람가 등급은 제외한다.

가. 항목표시



4.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를 대신하여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.

5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
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) 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□ 별표 2의3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등(제27조제2항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상호나 그 밖의 사항: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: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.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. 가. 전체관람가 등급: <u>지름 1.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“전체관람가”를 표시한다.</u> 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지름 1.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“12세 관람가”를 표시한다.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: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<u>시청하는 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</u> 가. 전체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“ALL”을 표시한다.</u> 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“12”를 표시한다.</u>

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지름 1.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“15세 관람가”를 표시한다.</u> 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<u>지름 1.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“청소년 관람불가”를 표시한다.</u> 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: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<u>주제(유해성 등)· 선정성· 폭력성· 대사(저속성 등)· 공포· 약물· 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내용정보</u>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. 가. 항목표시 <u>*너비와 높이는 1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u>	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“15”를 표시한다.</u> 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“18”을 표시한다.</u> 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: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<u>주제· 선정성· 폭력성· 대사· 공포· 약물· 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표 핵심사유 3개 이내의 항목에 대하여,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. 다만, 전체관람가 등급은 제외한다.</u> 가. 항목표시 <u>*항목표시는 시청하는 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</u>
--	---



나. 항목별 정도의 표시: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“보통”, “다소 높음”, “높음”, “매우 높음”으로 표시하며, 각 항목별 정도가 “낮음”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.



나. (삭 제)

□ 별표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(제27조제3항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의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이나 끝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 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: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 초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원형의 크기는 화면 대각선의 20분의 1 이상(등급표시 글자 수가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15분의 1 이상)이어야 한다. 가. 전체관람가 등급: <u>녹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“전체관람가” 나 “전체” 를 표시한다.</u> 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파란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“12세 이상 관람가”, “12세 관람가”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비디오물의 등급표시: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는 시청하는 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초기 화면에 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. 가. 전체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“ALL”을 표시한다.</u> 나.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“12”를 표시한다.</u>

또는 “12”를 표시한다.	
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노란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“15세 이상 관람가”, “15세 관람가” 또는 “15”를 표시한다.</u>	다.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“15”를 표시한다.</u>
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<u>붉은색 바탕의 원형 안에 흰 글씨로 “청소년 관람불가”를 표시한다.</u>	라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: <u>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“18”을 표시한다.</u>
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: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(유해성 등)·선정성·폭력성·대사(저속성 등)·공포·약물·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.	3.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: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·선정성·폭력성·대사·공포·약물·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위원회에서 제 공하는 대표 핵심사유 3개 이내의 항목에 대하여,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체관람가 등급은 제외한다.
가. 항목표시	가. 항목표시
	

나. 항목별 정도의 표시	나. (삭 제)
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“보통”, “다소 높음”, “높음”, “매우 높음”으로 표시하며, 각 항목별 정도가 “낮음”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.	
4.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를 대신하여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.	4. (현행과 같음)
5.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	5. (현행과 같음)
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	